

5만원 이상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 개정세법 주요골자

○ 법인세법

-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5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기밀비는 접대비 범위내의 10%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도록 함.
- 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미납부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1일 0.05%(연 18.25%)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라.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영리법인에서 자산 70억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축소함.

○ 소득세법

- 가.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3억 미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산출세액의 10%를 (50만원 한도) 기장세액공제 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을 유도함.
- 다.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율을 30%~50%에서 20%~40%로 인하함.
- 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행정지도로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는 한편 유흥업소의 경우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총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글/임현석 세무사

마.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

### ○ 부가가치세법

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 용역과 담배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 ※ 사업자등록증 변경 요령

- 변경시한 : '99년 1월 20일 까지
- 기존에 면세사업자 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을 다시하여야 함.
- 전문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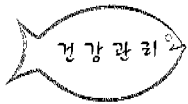
있음.

- 일반개인 소비자에게 공급분은 영수증(간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사업자에게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나.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매출액 5억 미만 개인사업자 까지 확대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제도는 폐지하였음.

다.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20%~30%을 공제하도록 하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함.



## 과 로 예 방 법

40대에 가장 많은 돌연사의 50%가 과로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중년의 과로는 심하면 죽음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 ◆ 적당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가?
- ◆ 가족을 사랑하는가?
- ◆ 가정은 화목한가?
- ◆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 ◆ 술자리는 1차로 끝내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가?